

서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

2003. 5. 6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3. 5. 1
- 나. 제출자 : 서산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3. 5. 1
- 라. 상정일자 : 2003. 5. 6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)

가. 제안이유

-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등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
-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
-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
- 8시·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협의회 명칭 : 서해안권행정협의회

- 협의회 구성 : 8시·군
 - 서산시, 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
- 규약주요내용
 - 협의회위원 : 서산시장, 보령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(8명)
 - 회 장 : 회의개최지 시장·군수가 하되 8시·군 윤번제
 - 임 기 : 6개월
 - 협의사항 :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다음사항
 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 -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
 -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 -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 -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 -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
 -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사항
 -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사항
 - 회 의
 - 정기회의 :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개최
 -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
 -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
 - 상임위원 :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 실·과장
 - 비상임위원 : 안전에 관련된 실·과장
 - 미합의 사항 처리
 - 미합의된 안전은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1회에 한하여 다시 상정후 미합의시 안전으로 상정 불가
 - 2회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신청

- 경비부담 : 각 협의회원이 공동부담
- 규약변경 :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

○ 규약시행일 : 2003. 7. 1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규약 승인건은 충남 서해안 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대중국 무역의 수출전진 기지로 대기업들이 입주하여 신흥공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는등 제반여건의 변동으로
 - 충남 서북부지역 현안사항의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 방안의 모색·광역 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등 광역행정 수요증가에 따라서 지역 현안사업의 공동추진등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바, 금번에 서북부지역 8개시·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주요 규약내용을 살펴보면
 - 규약안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로 하며,
 - 규약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서산시, 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으로 2개시 6개군으로 구성하고,
 - 규약안 제4조 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·군수가 하되 8개 시·군의 시장·군수가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하도록 하며,
 - 규약안 제5조 협의 사항으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 행정 사항중

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-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-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-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-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-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
-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사항
-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사항 등을 협의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2003. 7. 1일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

- 서해안권행정협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하고 있는 8개시·군이 관심을 가질만한 추진(현안)과제의 발굴과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추진으로 협의회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여 형식적인 협의회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
-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 효율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부단한 공동노력이 있어야만이 당초에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수할 수 있을 것임.
- 따라서 본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안과 같이 승인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및 소수의견 : 없었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5/호
의 결 년 월 일	2003. . . (제 회)

서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3. 7. / .

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5. /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-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등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
-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
-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
- 8시·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 받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가. 협의회 명칭 : 서해안권행정협의회

나. 협의회 구성 : 8시·군

- 서산시, 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

다. 규약주요내용(규약 별첨)

- 협의회위원 : 서산시장, 보령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(8명)
- 회 장 : 회의개최지 시장·군수가 하되 8시·군 윤번제
- 임 기 : 6개월
- 협의사항 :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다음사항
 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 -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조성
 -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
-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-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-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-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
○ 회 의

- 정기회의 :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개최
-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

○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

- 상임위원 :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 실·과장
- 비상임위원 : 안전에 관련된 실·과장

○ 미합의 사항 처리

- 미합의된 안전은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1회에 한하여 다시 상정후 미합의시 안전으로 상정 불가
- 2회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신청

○ 경비부담 : 각 협의회원이 공동부담

○ 규약변경 :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

라. 규약시행일 : 2003. 7. 1

3. 참 고 사 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제142조(지방의회 의결사항)

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

제1조(목적) 보령시, 서산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간에 관련되는 현안 협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타 협의회위원의 자치단체간 협력과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해안권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2조(사무소 위치)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둔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보령시, 서산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조직) ①협의회의 위원은 보령시장, 서산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로 한다.

②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·군수로 하고 6개월 임기로 하며 8개 시·군의 시장·군수가 윤번제로 맡는다.
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기 개최지 시장·군수가 회장을 맡는다.

⑤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시장·부군수가 대신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협의사항)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2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3.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4.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5.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6.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9.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협의방법)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안전 관련 자치단체 협의회 위원만의 찬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 개최한다.

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실무협의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위원은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 실·과장으로하고 비상임위원은 안전에 관련된 실·과장으로 한다.

③실무협의회장은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상임위원이 된다.

④회의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무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
⑤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)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이 된다.

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미합의 사항 처리) ①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.

②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경비부담)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각 협의회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.

제12조(회계)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3조(규약변경) 이 규약의 변경은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한다.

제14조(보칙)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협약은 2003. 7. 1일부터 시행한다.

西海岸圈行政協議會


保寧市長 李時雨



洪城郡守 蔡玄秉



瑞山市長 曹圭宣



禮山郡守 朴鍾淳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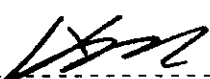
舒川郡守 羅紹烈



泰安郡守 陳泰龜



青陽郡守 金是煥



唐津郡守 金洛聖

